

『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주요개정사항 및 시사점

I. 들어가며

2025년 7월 3일, 미국 하원은 218대 214의 극적인 표결 끝에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를 재의결 통과시켰으며, 다음 날인 7월 4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최종 입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감세, 국방, 국경, 복지, 산업정책을 포괄하는 주요 입법 성과로, 지난 5월 12일 초안이 공개된 이래 5월 22일 하원 본회의 통과, 6월 16일 상원 재무위원회 수정안 공개, 7월 1일 상원 수정안 통과를 거쳐 최종 완성되었습니다. OBBBA 중 미국 산업지원 관련 내용으로는 (I) 현행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기반한 각종 세액공제와 보조금 제도를 조기 종료(30D, 45W, 친환경차 세액공제)하거나 45X 첨단제조세액공제의 수혜자격을 제한하면서(해외금지기관, PFE), 공급망 요건을 강화하고(실효적 통제 및 실질적 지원 요건 신설), (II) 기존 감세 및 일자리 법(TCJA)을 확대, 영구화하거나 신규 감세를 도입하고, (III) 1기 때 도입된 세원잠식 남용방지세제 ("BEAT"), 저세율 과세 무형자산소득 ("GILTI"), 및 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 세제 ("FDII") 등 국제조세 제도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기업과 대미 투자자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지원 및 세제개편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I. IRA 관련 개편 사항

주요 개편내용

항목	OBBBA 주요 내용
§30D, 45W (친환경차 세액공제)	2025년 9월 30일 이후 취득하는 차량부터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
§45X (첨단제조 세액공제)	- 전반적인 혜택수준은 유지되나, 품력의 경우 2027년말 혜택 종료됨 (기존 2030년부터 단계적 감축, 2032년 말 종료) - 배터리 모듈 관련 정의 수정 - 통합부품/2차 적격물품 관련 요건 강화 - 핵심광물에 대한 생산비용 10%공제가 2031년부터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33년에 종료될 예정이며, 제강용 석탄이 핵심 광물에 추가됨(미국산 여부 불문, 공제율 2.5%, 단 29년말 폐지) - 수혜제한 규정이 신설되어 2027. 1. 1.부터 (i) 해외금지기관(PFE)이거나 (ii) PFE의 '실질적 지원'을 받는 경우 세액공제 불가 - IRC §6418에 따른 양도는 여전히 가능하나, 양수인이 SFE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며, 추후 SFE로 판명되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으며, 재무부의 심사는 강화 예정

항목	OBBBA 주요 내용
Prohibited Foreign Entities (“PFE”, 해외금지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	- 해외금지기관(PFE, 후술할 SFE/FCE/FIE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간주 될 경우 §45X 세액공제 및 연방 조달 원칙적으로 배제 - 특정외국기관(SFE): 위구르 리스트, 고위험 국가에 설립/국유화된 기업의 경우 미국 국세청 (IRS) 신고·승인 필요, 특정 중국 배터리, 에너지 업체 (CATL, BYD, Envision Energy, EVE Energy, Gotion High tech, Hithium 등) 포함 외국통제기관(FCE)도 SFE에 포함되며, 고위험 국가 소속 기관·기업이 지분 및 의결권 50% 비율 초과 시 즉시 PFE로 분류(단, 해당 기관의 증권이 미국 증권시장에서 정기거래되는 경우 일부 예외) - 외국영향기관(FIE): 특정외국기관(SFE)이 이사, 임원 등을 임명할 직접적인 권한을 보유 하거나, 단일 SFE 지분 25% 이상, 복수 SFE 지분 40% 이상(단, 해당 기관의 증권이 미국 증권시장에서 정기거래되는 경우 일부 예외) SFE 부채 15% 이상 보유, 또는 SFE가 계약·합의 또는 기타 라이선스 계약 등 약정을 통해 실효적 통제 (재무부 장관이 가이던스 제정 예정)시 즉시 PFE로 분류
준수 의무 및 제재	공급망 인증 오류 시 공제 박탈, 과소 신고 벌금 10%, 감사 기간 6년 연장, 허위 인증 시 공급업체 과태료, 소규모 오류(1%)도 Penalty 적용 가능

세부 내용

가) §30D, 45W (친환경차 세액공제)의 조기 폐지

- IRA 상 §30D, 45W세액공제에 따라 기존에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를 사는 구매자는 최대 7500 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32년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었던 공제기간이 OBBBA에 따라 조기 종료되어 2025년 9월 30일 이후 취득하는 차량부터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

나) §45X(첨단제조 세액공제)의 개정

- OBBBA에서 §45X(첨단제조 세액공제)에 수혜제한 규정인 해외금지기관 (Prohibited Foreign Entity, PFE) 및 실질적 지원(material assistance) 규정이 신설되어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부품 내 PFE로부터 확보된 소재의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제한하되, 그 비율을 연도별로 점증하는 방식으로, 중국 공급망 탈피를 의도하는 것으로 보임
- 배터리 모듈의 정의 변경
 - OBBBA 법안 시행 이후 과세연도부터, “배터리 모듈(BATTERY MODULE)”의 정의가 변경되어 해당 모듈이 “배터리 기능에 필수적인 모든 장비(전류 수집 장치(current collector assemblies), 전압 감지 하니스(voltage sense harnesses)) 등 배터리 기능에 필수적인 기타 장비 전체 또는 기타 필수 에너지 수집 장비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

- 핵심광물의 추가 및 공제제한 추가
 - 핵심광물에 대한 생산비용 10%공제가 2031년부터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33년에 종료될 예정이며, 제강용 석탄이 핵심광물에 추가됨(미국산 여부 불문, 공제율 2.5%, 단 29년말 폐지)
- 통합부품 요건 강화
 - 기존 §45X(d)(4)에서는 1차 적격부품(primary component)이 동일 제조시설 내에서 2차 적격부품(secondary component)에 함께 결합되어 최종적으로 제3자에게 판매되는 경우, 제한 없이 1, 2차 부품 모두 세액공제가 인정되었음. 그러나, OBBBA는 1차와 2차 적격부품들이 모두 한 제조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제2차 부품의 생산에 들어가는 총 직접재료비의 최소 65%가 미국내에서 채굴, 생산 또는 제조된 제1차 적격부품에 해당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함
- 실질적 지원(Material Assistance) 규정 신설
 - 적격부품의 비용비율(총재료비 중 PFE 비용 이외 비용의 비율)이 판매연도별 아래 표의 분야별 기준치보다 낮은 경우 PFE로부터 실질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간주됨. 제조업체는 아래와 같은 기준치 내 비율로 PFE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자재를 조달하더라도, 여전히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태양광	50%	60%	70%	80%	85%
풍력	85%	90%	-	-	-
인버터	50%	55%	60%	65%	70%
배터리 부품	60%	65%	70%	80%	85%
	'26-29년	'30년	'31년	'32년	'33년이후
핵심광물*	0%	25%	30%	40%	50%

* 미국 내 가용성, 국가 안보, 공급망 제약 등을 고려해 미국 재무부 장관이 2027년까지 위 비율보다 낮지 않게 조정할 의무 부과

- 적격 시설 및 에너지 저장 기술의 공사 개시 시점(Beginning of Construction)에 따라, 프로젝트가 준수해야 할 비해외금지기관(non-PFE)의 조달 비율(Threshold Percentage)이 결정되며, 해당 비율은 착공 연도가 후행할수록 점진적으로 강화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예를 들어, 2028년에 공사를 개시하는 경우, 프로젝트에 필요한 부품·기술·광물 등의 최소 50% 이상을 비해외금지기관(non-PFE) 공급망으로부터 조달해야 함

착공연도	기준비율(Threshold Percentage)
'26년 시작	40%
'27년 시작	45%
'28년 시작	50%

착공연도	기준비율(Threshold Percentage)
'29년 시작	55%
'30년 이후 시작	60%

- PFE에 귀속되는 실질적 지원 비율은 재무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할 Safe Harbor Table에 따라 계산하며, 발행 전까지는 공급업체의 인증서(certification)나 IRS 고시(IRS Notice 2025-08)로 발표된 비용산정표를 활용할 수 있음. 단, 기업이 공급업체 인증서가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만한 사유(reason to know)가 있는 경우, 해당 인증서는 무효로 간주함. 공급업체의 허위 인증이 적발될 경우, 공급업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지급형태 요건의 삭제 (최종안 수정사항)
 - OBBBA 최종안에서는 기존 하원안에 포함되어 있던 PFE에 대한 지급형태(payments) 요건이 삭제됨. 기존 하원안은 납세자가 PFE에게 지급한 금액이 해당 연도 생산 관련 총 비용의 5% 또는 복수 PFE 합산 15%를 초과할 경우 세액공제를 제한하는 구조였으나, 최종안은 이 지급형태 요건을 전면 삭제하였으며, 현재는 실질적 지원 비율만으로 세액공제 자격을 판단함. 지급 금액이 많더라도, 현재는 지급 금액의 비율은 세액공제 제한 요건으로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 실질적 지원은 PFE가 제공하는 부품·기술·광물 등 물리적 또는 계약상 지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연도별·제품별 Safe Harbor Table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다) 45Y, 48E 청정전력생산 및 투자세액공제

- 기존 IRA는 2024년 말 이후 가동 개시한 태양광, 풍력 발전시설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면서 2032년 또는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의 25% 이하가 되는 해 중에 더 늦은 시점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2027년 12월 31일 이후 가동되는 풍력,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조기 종료
 - 단 동 조항은 법 시행 12개월 이후 착공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시설에 설치된 에너지 저장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는 허용됨
- 2025년말 이후 착공분부터 수혜기업이 PFE이거나 PFE로부터 어떠한 실질적 지원을 받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배제함

라) 해외금지기관(Prohibited Foreign Entity, PFE) 및 실질적 지원의 적용 배제

- 정의(§7701(a)(51))
 - 해외금지기관(PFE)은 특정해외기관(SFE), 해외통제기관(FCE), 해외영향기관(FIE)으로 규정됨. 2017년 1월 1일부터 수혜대상 기업이 SFE, FCE, FIE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자동으로 PFE로 분류되며(수혜자격 요건), PEF로부터 어떠한 실질적 지원을 받은 경우 45X의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됨
- 세액공제 혜택의 제한 및 실무적인 영향
 - PFE로 분류될 경우 대부분의 친환경 에너지 세액공제 및 §45X 첨단제조 세액공제의 적용이 배제됨. 특히 §45X의 경우 세액공제의 적용을 신청한 제품·부품이 모두 제외됨

- OBBBA 최종안에서는 기존 하원안에 포함되어 있던 '지급 금액(payments) 비율 요건'을 삭제하였으며, 지급 비율은 공제 제한 요건이 아님
- §6418에 따른 세액공제의 제3자 양도(transfer)는 유지되나, SFE에 대한 양도는 금지됨
- **준수 및 공시 의무**
 - PFE와 연관된 기업은 공급망 실사, 공급업체 인증서 확보, IRS 신고서 제출(Form 8936 등)을 필수로 이행해야 함. 공급망 관리 미이행 시, IRS 감사 기간이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며, PFE 관련 과소 신고 시 가산세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특정해외기관 (Specified Foreign Entity, SFE)**
 - '외국 관심 단체 (foreign entity of concern)' 또는 이에 준하는 지정 대상으로 분류된 기업 또는 단체를 포함함
 1.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9901(8)의 (A), (B), (D), (E) 항에서 정의한 외국 관심 단체;
 2.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1260H에 따라 미국 내에서 활동 중인 '중국 군사기업(Chinese military company)';
 3. 공법 117-78 §2(d)(2)(B)항에 따른 목록 중 (i), (ii), (iv), (v)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 또는
 4.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154(b)에 따른 지정 대상
 5. 해외통제기관
 - 또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위구르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 그리고 고위험 국가(covered nation)에 설립되거나 국유화된 기업, 즉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우려 국가 기업도 포함됨
 - SFE가 지분, 계약, 기술 제휴 등을 통해 연루된 경우, 납세자는 해당 사실을 IRS에 신고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음. IRS는 향후 구체적인 이행지침을 통해 공시 및 승인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SFE와 거래하거나 기술을 공급받는 기업은 공급망 실사를 강화하고 IRS가 제시하는 안전항목을 철저히 충족해야 함
- **해외통제기관 (Foreign-Controlled Entity, FCE)**
 - (i)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등 고위험 국가의 정부(또는 그 하위 정부조직), (ii) 해당 정부의 기관·또는 산하기관, (iii) 고위험 국가 국민(미국 영주권자는 제외)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나, (iv) 고위험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본사가 해당 국가에 위치한 법인, 또는 (v) 이들에 의해 '지분 또는 실질적 이익 (beneficial interest)의 50% 초과' 보유하는 기업으로 정의함. 이때 소유권 기준은 미국 내국세법 제318조 (a)(2)가 준용됨
 - FCE는 SFE의 하위 개념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SFE 및 PFE로 분류되어 친환경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련 연방 조달사업(특허·계약 등)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해외영향기관 (Foreign-Influenced Entity, FIE)**
 - 해외영향기관(FIE)은 다음 중 하나가 충족하면 해당:
 1. 해당 과세연도 동안 단일 SFE가 이사, 임원 등을 임명할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거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SFE가 총합 4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3. SFE가 15% 이상의 부채를 보유하는 경우; 또는

4. 이전 과세연도 (taxable year)에 SFE와의 계약을 통해 자격시설, 에너지저장 기술 또는 핵심광물 채취·생산 과정에서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를 행사하는 경우
 - 해외영향기관으로 판정될 경우 PFE가 되어 모든 관련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며, 납세자는 SFE와의 기술·자금 거래 내역을 철저히 기록·공개해야 하며, 잘못 신고할 경우 연장된 감사 기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실효적 통제 (Effective Control)

- 실효적 통제란 직전 과세연도 동안 SFE가 계약·라이선스를 통해 과세대상 시설의 생산량, 전력 판매처, 데이터 접근, 장비운영·수리 등 핵심 요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함. 예를 들어 SFE가 생산량·납품시기 또는 지적재산 사용을 계약으로 구체적으로 지시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실효적 통제가 인정됨
- 실효적 통제가 인정되면 해당 기업은 해외영향기관(FIE)로 간주되어 §45X 세액공제 및 연방조달 참여 자격이 배제됨. 즉, 지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계약만으로도 공제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중국 회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이 OBBBA가 서명된 날이나 그 이후에 체결되면 실효적 통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됨

● 준수 의무 및 제재

- 공급망의 인증: 납세자는 제조업체나 공급자로부터 자재·부품 공급 시 “해당 공급망이 PFE와 무관하다”는 인증서를 받고, 6년간 보관하며, IRS가 요청 시 제출 해야함
- 감사 기간의 연장: 만약 PFE 관련 규정 위반 (예: “실질적 지원”)이 발견되면, 해당 과세연도 신고에 대해 IRS가 기존 3년이 아닌 6년까지 소급해 감사할 수 있음
- 과소신고 관련 제재: 기존에는 과소신고가 발생할 경우 납부해야할 세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중대한 과소신고 (substantial understatement)로 간주했지만, OBBBA에서는 1%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급업체의 허위 인증이 적발될 경우 공급업체에게 아래와 같이 Penalty가 부과될 수 있음:
 - 과소납부 세액의 10% 또는 \$5,000 중 더 큰 금액

마) §45X OBBBA 준수 체크리스트

- 실질적 지원 비율 산출: 적격 시설, 에너지 저장 기술, 적격 부품에 대한 실질적 지원 비용 비율이 기준치보다 낮은 경우 PFE로부터의 실질적 지원으로 간주
- 공급자별로 원산지 증명 확보, 금지 외국 법인 여부 평가, 비용 비율 산출 및 기준치 이내 확인 필요
- 납세자가 해외금지기관 (특정해외기관(SFE), 해외통제기관(FCE), 해외영향기관(FIE))인지 여부 확인과 함께 비율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III. 법인세 관련 개편 사항

가) 특정 자산에 대한 100% 보너스 감가상각 영구화 (100% Bonus Depreciation) - §168(k)

- 100% 보너스 감가상각이란, 기업이 취득한 적격 자산에 대해 수년에 걸쳐 감가상각하는 방법 대신, 구매한

해에 즉시 전액 비용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임. 트럼프 1기 때 도입되었던 100% 보너스 감가상각은 기존 법에 따라 2022년까지 100% 적용되다가 적용 비율이 2023년에는 80%, 2024년에는 60%. 2025년에는 40%로 같이 점점 감소하다가 2027년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OBBBA에 따라 2025년 1월 19일 이후 취득 및 사용 개시된 적격 자산에 대하여 100% 보너스 감가상각이 영구적으로 허용됨

- 기존 TCJA와 동일하게, 건물(building) 자체에는 보너스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QIP(Qualified Improvement Property)는 적용 대상임. QIP는 비주거용 부동산이 처음 사용된 이후 시공된 실내 개선 공사 등을 포함하고 있음

나) 미국내 연구개발비 즉시 공제 영구화 (Full Expensing of Domestic Research and Experimental Costs) - §174A

- 기존 법은 미국내 연구개발비는 5년에 걸쳐 이연상각 하도록 규정하였음. OBBBA는 2024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미국내 적격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영구적 즉시 비용처리를 허용함. 연간 매출 3천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는 본 규정을 2021년 12월 31일 이후 지출분에 소급 적용할 수 있으며, 기타 사업자는 남은 공제를 가속 적용할 수 있음

다) 기업의 순이자비용의 공제 한도 재도입 (Limitation on Business Interest Expense) - §163(j)

- 기존 법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이자·세금·감가상각·무형자산상각 차감 전 이익(EBITDA)을 기준으로 하는 공제 한도를 재도입함

라) 첨단제조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정 (Enhancement of Advanced Manufacturing Investment Credit) - §48D

- 미국 반도체 생산 장려를 위한 CHIPS 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2025년 12월 31일 이후 사용 개시되는 자산에 대하여 기존 25%에서 35%로 상향함. 단, 본 개정은 공제 종료일(2026년 12월 31일)을 연장하거나 적용 대상을 확대하지 않음

IV. 국제 조세 관련 개편 사항

가) OBBBA 최종 버전에는 소위 “보복세”(§899)는 포함되지 않음

- 미국계 다국적기업(U.S.-parented groups)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을 전면 배제하기로 하는 G7 국가 간 합의에 따라 기존 OBBBA 하원/상원 버전에 포함됐던 소위 “보복세”(§899)는 OBBBA 최종안에서 삭제됨

나) GILTI(Global Low-Taxed Income)

- 2017년 트럼프 1기 세제개편(TCJA)으로 도입된 미국의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제도는 저세율 국가로의 소득 이전(세원 잠식)을 막기 위한 방어 규정으로 미국 기업이 외국 자회사(CFC)를 통해 벌어들인 이익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해당 소득을 미국 본사가 미국 세율로 일부 과세 받게 됨

- GILTI의 명칭을 “Net CFC Tested Income”(“NCTI”)으로 변경
 - 변경된 NCTI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실효세율 14% 적용
- 직접 비용 외의 대부분 비용 배분을 폐지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FTC) 한도를 10% 감액 적용
- 2025년 12월 3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적격 사업용 자산 투자(QBAI) 규정을 폐지하며, 모든 순 CFC 테스트 소득에 14% 세율을 적용

다) FDII(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를 FDDEI(Foreign-derived Deduction Eligible Income)으로 개편

- GILTI가 외국 자회사의 소득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채찍(그동안 과세할 수 없었던 외국 자회사의 해외 무형자산 소득에 낮은 세율로나마 세금을 부과)이라면, FDII는 지적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 소득이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으로 관련 경제 활동을 옮기도록 유도하고 미국 내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당근의 역할을 함
- OBBBA는 FDII의 명칭을 “Foreign-derived Deduction Eligible Income”으로 변경
- 변경된 FDDEI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실효세율 14% 적용
- 추정 무형소득(Deemed Intangible Income) 규정을 일부 조정하며 특정 항목을 제외
- QBAI 폐지로 모든 적격 소득에 14% 세율 적용

라) BEAT(Base Erosion Anti-Abuse Tax) 세율 인상

- BEAT는 국외로의 세원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되었으며, 미국에서 창출한 연매출이 5억달러를 초과하고 세원잠식비율(BE%)이 3% 이상인 기업에 적용됨. 공제 처리된 국외 관계사 지급금액을 다시 합산한 조정과세소득에 최소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소득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며, 이 금액이 납세자의 정규 소득세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 세액이 발생하는 일종의 최저한세(minimum tax) 제도임
- 기존 10%에서 최종안은 10.5% 세율을 영구 적용
- 특정 세액공제의 사용을 영구 허용
- 상원 재무위원회 초안에 포함된 고세율 예외 규정은 미포함

마) 해외송금세 신설 - §4475 (신설 조항)

- 2026년 1월부터 개인이 현금, 머니 오더, Cashier's Check 등을 송금업체에 제공하여 미국으로부터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송금인에 1%의 물품세(excise tax)를 부과하며,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는 경우나 금융기관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미국 발급 직불·신용카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됨

Related Areas

국제조세

Contact

최용환 변호사

02-528-5709

ywchoi@yulchon.com

정현 공인회계사

02-528-5524

hjeong@yulchon.com

김아이린 외국변호사

02-528-5728

ireneykim@yulchon.com

홍욱선 외국변호사

02-528-5568

wshong@yulchon.com

이수민 변호사

02-528-6405

smyi@yulchon.com